

DB자산운용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2026.6. RI전략본부

제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DB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 방식 및 대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련 조직)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탁자 책임활동은 RI전략본부 및 주식운용본부에서 실무를 담당(이하 주관 부서)하며,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은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이하 지침) 제5조에서 규정한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장 집중관리대상 기업 선정

제3조 (집중관리대상 기업 선정)

① 위원회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유 비중 및 지분율, 그 외 펀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집중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관리한다.

② 선정 시기는 1분기 중 전년도 말 기준으로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이

합의하여 수시로 종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 2장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



제4조 (중점관리사안 선정)

위원회는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으로써 당사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해 그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제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한다.

제5조 (중점관리사안 모니터링 활동)

- ① 주관 부서는 집중관리대상 기업 중 중점관리사안과 관련하여 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유무를 점검하고 이를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반기 주기로 보고하며, 즉시 보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② 위원회는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기업에 대한 비공개 대화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중점관리사안 관련 비공개 대화)

- ① 주관 부서는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며, 이를 통하여 사실 관계 파악, 기업의 입장 요청 및 개선 대책 요구 등 필요한 소통을 수행한다.
- ② 비공개 대화 방식은 해당 기업 유관 부서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비공개 서신 발송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당사 및 대상 기업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 ③ 비공개 대화는 기업과의 우호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비공개 대화 경과와 위원회에 반기 별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비공개 대화 연장 및 종료, 대화 수위의 강화(공개 주주 활동 등)를 결정한다.

제7조 (중점관리사안 관련 공개 주주 활동 등)

- ① 주관 부서는 공개 활동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공개 서한을 송부하여 기업의 입장 및 개선 대책 요구, 경영진 혹은 이사회 구성원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② 공개 활동의 경과 및 결과는 위원회에 반기 별로 보고하며 위원회는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 활동의 연장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공개 활동 대상 기업이 소통을 거부하거나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개선 여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 철회, 비중 조정 또는 주주제안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장 ESG 컨트러버셜 이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제8조 (ESG 컨트러버셜 이슈 점검)

- ① ESG 컨트러버셜 이슈는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ESG 관련 사건, 사고 및 이벤트를 의미한다.

- ② 주관 부서는 집중관리대상 기업에 대하여 ESG 컨트러버설 이슈 발생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동 이슈가 기업 가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그 외 ESG 컨트러버설 이슈 점검 내역은 원칙적으로 분기 별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위원회는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개 대화 대상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ESG 컨트러버설 이슈에 대한 비공개 대화)

ESG 컨트러버설 이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은 제6조(중점관리사안 관련 비공개 대화)를 준용한다.

제10조 (ESG 컨트러버설 이슈에 대한 공개 주주 활동)

ESG 컨트러버설 이슈에 대한 공개 주주 활동은 제7조(중점관리사안 관련 공개 주주 활동 등)를 준용한다.

제 4장 기 타

제11조 (공시)

- ① 주관 부서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 연도별로 수탁자 책임 이행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고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제10조 (공시)에 따라 보고서를 공시한다.